

##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

제정 : 2007.04.11

개정 : 2018.09.13

개정 : 2020.09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2.04.11

개정 : 2022.12.01

제1조(명칭) 이 위원회는 “대학평의원회”라 칭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「민송학원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.) 제9장 제111조에 의하여 대학평의원회(이하 “평의원회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3조(평의원회 구성) ① 평의원회는 교원, 직원,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,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12. 01., 2022. 04. 11.>

1. 교원 3명(10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) <개정 2018. 09. 13.>
2. 직원 3명(10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원) <개정 2018. 09. 13.>
3. 학생 1명(학생자치기구 대표자인 총학생회장) <개정 2018. 09. 13.>
4. 조교 1명 <신설 2022. 04. 11.>
5.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<개정 2022. 04. 11.>
6. 총장이 추천하는 자 1명 <개정 2022. 04. 11.>

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4조(평의원 위촉)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 :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
2.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 :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
3.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 :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
4.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 : 조교 중에서 선출한 자 <신설 2022. 04. 11.>
5.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: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2. 04. 11.>

제5조(평의원회 의장 등) ① 평의원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
-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,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-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재한다.
-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
제6조(평의원의 임기)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 다만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평의원은 1년 단임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, 2022. 04. 11.>

- ②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평의원의 자격상실) 평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각 단위의 평의원이 신분을 달리할 때
2.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<개정 2021. 12. 01.>
3. 기타 평의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<개정 2021. 12. 01.>

제8조(평의원회 기능)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 제3호,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. <개정 2020. 09. 01.>

1. 대학교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3. 대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4.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<개정 2022. 12. 01.>
5. 대학교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6. 대학교 현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7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9조(임원의 임무) ①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한다.

- ②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간사는 회의 개최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하고, 평의원회 회의사항을 기록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10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의장은 회의개최에 대한 사전내용을 공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. <개정 2018. 09. 13., 2021. 12. 01.>

- ② 회의 소집은 총장 또는 재직 평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 의장이 회의

개회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③ 의결은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10조의2(회의록) ① 평의원회는 회의일시, 장소,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09. 13.>

②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의원회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09. 13.>

제11조(간사) ①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간사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, 관리한다.

제11조의2(개방이사추천위원회) ①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평의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선발하여 추천한다.

③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09. 13.] <개정 2021. 12. 01.>

제12조(규정의 개정) ①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 또는 의장의 발의로 제안한다.

② 이 규정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되며 의장은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13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사립학교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법인 정관」을 준용한다. <신설 2018. 09. 13.>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최초 위촉 평의원의 임기는 200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 다만 제3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2008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